

예천읍 종합감사 결과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6. 2. 16. ~ 2. 19.(4일간)
-  감사범위 : 2014. 3. 4 ~ 2016. 2. 15까지 업무전반
-  감 사 반 : 법무감사담당 외 5명
-  중점 감사내용
 - 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여부
 - 정부지원사업 관련 관리실태
 - 각종 민원 및 업무처리 실태 적정여부 등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 29건(주의 10, 시정 7, 현지시정 12)
 - 본 처분 17건(주의 10, 시정 7)
- 재정상 조치
 - 3건 293,327원(세입 1건 13,327, 회수 2건 280,000원)

지적사항 일람표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 치	재정상조치	
				구분	금액(원)
계	예천읍	17건	주의 10 시정 7	세입1 / 13,327 회수2 / 280,000	
1	총무담당	당직근무 및 복무규정 미준수	주의		
2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정리 미흡	주의		
3	"	읍면예산 및 재배정 현금출납부 불일치	주의		
4	"	자율방범대 운영 보조금(하반기) 지급 및 정산 부적정	주의		
5	"	신용카드 사용 인센티브 세입조치 미이행	시정	세입	13,327
6	"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소화	주의		
7	"	폐기물 재활용 시설물 관리 소홀	시정		
8	"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관리 소홀	주의		
9	"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 홈페이지 미게시	시정		
10	주민복지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확인 소홀	주의		
11	민원담당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접수 부적정	주의		
12	산업담당	소형농기계 및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사후 관리 부적정	시정		
13	"	채소류 및 전작류 생산량 조사 소홀	주의		
14	"	가축통계조사 업무 소홀	주의		
15	건설담당	공사비 미 정산 과다지급 ( 리 배수로 및 진입로 확포장)	시정	회수	140,000
16	"	공사비 미 정산 과다지급 ( 리 도시계획도로 옹벽설치)	시정	회수	140,000
17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존치기간 만료 후 행정절차 미 이행	시정		

주요지적사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근무기강의 확립) 제1항에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고, 예천군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대한 규칙 제10조(당직 근무자의 위치)에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을 설치한 기관 중 숙직을 무인화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비상연락망을 유지하여 재택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업무)에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2014. 3월부터 2015.12월까지 당직근무 및 복무규정을 미준수 하였음.

▶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80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출납원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를 정리해야 하고 동 조례 제152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음에도, 예천읍에서는 지방재정시스템 이해부족과 수납확인의 어려움으로 인해 감사기간 전반에 대해서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와 통장잔액이 불일치함.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90조(현금출납부)출납원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현금출납부에 출납할 때마다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하고 동 조례 제93조(출납사무의 검사)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2014년 6월 26부터 7월 2일까지 세입세출일계표에 의한 현금출납부의 일일결산을 소홀히 하여 통장잔액과 현금출납부가 불일치함.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예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의하면 예산 지원에 있어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3개월간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 및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고, 동 조례 제9조(준용)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급 및 정산 시 연중활동실적을 제출받지 아니하였고, 증빙서 또한 간이 영수증을 제출받아 정산하는 등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지 아니하였음.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자치부예규(제9호 2015.1.22.)에 의거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년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함에도 예천읍에서는 2014년 4월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포인트 13,327원을 세입조치 하지 않았음.

▶ 신용카드사용 포인트 13,327원을 세입조치 하고,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 제5조(채권의 매출대상 등) 제①항의3에 지방자치단체가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은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 및 수리제조계약은 대금청구액의 1.5/100의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나, 2014년 ○○리 ■■■외 1개 하상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비를 지출함에 있어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45,000원을 미소화 하였음.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예천읍에 설치된 폐비닐 집하장 9개소, 쓰레기적치장 7개소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시설물 상태 및 폐기물 보관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여야 함에도, 「폐비닐 집하장 설치현황」 「생활쓰레기 적치장 설치현황」 대장을 만들었으나 점검 기록을 하지 않았음.

▶ 폐기물 재활용 시설물을 주기적으로 점검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시정 요구

○ 재활용품 수집 증대를 위하여 단체 또는 마을 단위로 재활용품을 수집 판매 시 수집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환경관리과-43063(2014.12.17.)호」로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은 반드시 단체 또는 마을 공동계좌로 지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단체 또는 마을의 대표자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나 향후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보하도록 하였음에도 예천읍에서는 2015년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 시 단체 또는 마을의 대표자 계좌로 지급한 건에 대해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않았음.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환경관리과-6770(2015.3.5.)호」로 읍면 홈페이지에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 현황을 게시하여 주민들이 판매소를 쉽게 알 수 있게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현재까지 예천읍 홈페이지에 판매소 현황을 미 게시.

▶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 홈페이지 게시하도록 시정 요구

○ 의사무능력자의 급여 관리는 급여가 당사자에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지급되는 급여가 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하는 제도로써, 급여 관리자는 급여를 지출한 경우 그 내역을 기록(영수증 첨부)하고 읍·면·동장은 부적정 급여 관리의 개연성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현장 확인 점검하여 급여를 타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의사무능력자 3명에 대한 급여 관리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지출내역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인감증명법 제12조(인감증명의 발급) 인감증명을 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인 경우에는 자신의 무인을 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다.

인감증명을 발급함에 있어 대리 신청의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함에 있어 ♥♥♥ 외 24인에 대하여 위임자의 서명 날인을 누락하였음.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노동력절감,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중·소형 농기계와 곡물건조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 지원한 농기계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후관리기간(관리기 5년, 경운기 6년, 건조기 8년 등) 동안 관리토록 사업시행 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나, 보조지원 농기계 사후관리 업무를 추진하면서 2013~2015년 지원된 농기계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관리대장 누락 7건, 점검기록 미기재 4건, 사진 미첨부 1건에 대해 농기계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농기계 관리대장 보완 및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시정 요구

- 통계법 제17조 및 농업통계조사 규칙에 의거 농산물수급 안정, 통계자료 활용 등을 위하여 채소류, 전작류 등 농산물 재배면적 및 생산실적을 조사지침에 의거하여 행정조사 토록 되어 있으나, 2014~2015년 채소류, 전작류(두류,서류,잡곡) 재배면적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생산량 조사를 함에 있어 조사요령에 따라 표본조사 농가를 선정 하여 재배면적 및 수량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하나 표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임의로 생산량을 적용하였음.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축산사업의 기초자료 활용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 통계조사를 상·하반기를 기준으로 년 2회 대상축종에 대해 농가면담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2014년~2015년 가축통계 조사를 실시하면서 담당공무원을 통해 농가면담 전수조사를 실시 하여야 하나 주요가축 3종(한우, 육우, 젓소)에 대해 쇠고기이력 관리 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가축통계조사 업무에 소홀히 하였음.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건설공사를 설계 시행함에 있어 건설표준품셈, 공사원가계산적용기준,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고, 시공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하는 부분을 정리하여 조치하여야 하나,

- 2014.10.28. ♥♥건설(주) ♡♡♡와 계약한 ▲▲리(□□□□앞) 배수로 및 진입로 확포장공사 설계도면의 배수구조물 상세도와 불일치하게 시공 되었으나, 별도의 조치 없이 준공처리하여 도급액 기준으로 140,000원 (제경비포함)을 과다 지급하였음.

▶ 과다 지급된 공사비 140,000원을 회수하고, 준공검사 시 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 2014.08.05. ☆☆☆☆(주) ♣♣♣과 계약한 ○○리 도시계획도로 옹벽설치공사에 대하여 덤프트럭 적재시간(t1) 10분 초과분에 대하여 재료비에서 t1의 비율만큼 공제하여 단가 산출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공제하지 않고 별도의 조치 없이 준공 처리하여 도급액 기준으로 140,000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지급하였음.

▶ 과다 지급된 공사비 140,000원을 회수하고, 준공검사 시 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건을 처리함에 있어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존치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기간 만료 시 철거사실을 확인 하거나 존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함에도,
●●● 외 2건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존치기간 만료 후 행정절차를 미 이행.
-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건에 대해 미 이행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이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